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박영동 의원, 양은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,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,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~제6조)

나. 환경계획의 수립,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다. 국가 및 타지자체와의 협력, 군민참여,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
라.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를 따른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

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**제5조(사업자의 책무)**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·가공·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,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군민·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,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자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군민의 권리 및 책무)**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환경계획의 수립)**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,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

다.

1. 다음 각 목의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관리·보전 계획

가.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·생태환경

나. 대기, 수질, 토양 및 기후 등 생활·기후환경

2.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
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

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,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·대구광역시·군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**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**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민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, 사업자,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그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·기술의 제

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)**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군민참여 등)**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·집행·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환경교육·홍보)** 군수는 교육기관,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 및 자료의 제작·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**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환경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·추진 및 평가

3.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·홍보

4.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

5. 그 밖에 환경계획, 환경조사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·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”를 “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(환경계획 수립 경과조치)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 이 조례 시행 시 시행되고 있는 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.

## □ 「환경정책기본법(법률)」(2024.12.31. 타법개정, 2025.1.1. 시행)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환경기준의 설정)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,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·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(이하 “지역환경기준”이라 한다)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

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·군의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**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 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관련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(안 제9조)
- 환경계획 수립,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7조·13조)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2호)

**3. 미첨부 사유**

- 환경보전활동의 경우 조사 및 연구의 범위,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,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(안 제9조)
- 환경계획 수립의 경우 그간 수의계약 수준에서 용역을 시행해왔으며, 향후에도 현 수준으로 용역을 계약할 것으로 예상됨.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권고적 사항이며, 타 조례의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.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참석 수당 등 운영비용만 들 것으로 판단됨. 이에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(안 제7조·제13조)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 명 (연 락 처)

김 보 경 (☎ 2052)